



제391회국회(정기회)
제4차 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시 인권정책, 기본교육에
관한 사항 등 추가〉

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112520호)

2021. 11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선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시 군인의 인권정책, 기본교육 및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)	3
2. 대면 방식에 의한 기본권교육 실시(안 제38조제1항)	6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민형배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1. 9. 13.
3. 회 부 일 : 2021. 9. 1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,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. 4년 동안 25%가 증가한 것입니다.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

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인권정책·기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이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이에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.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았습니다.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7조제2항제4호·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군인의 인권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군인복무기본정책에 포함하도록 하고, 기본권교육을 대면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안 제7조제2항제4호·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)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조(군인복무기본정책) ① (생략)	제7조(군인복무기본정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4. 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</u>
<u><신설></u>	<u>5.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에 관한 사항</u>
4. (생략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8조(기본권교육 등) ① 국방부장관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	제38조(기본권교육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 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----- ----대면(對面)에 의한 방법으로 매년----- ----. 다만, 국방부장관은 감염 병 확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면에 의한 기본권교육이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기본권교육을 할 수 있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1. 군인복무기본정책 수립 시 군인의 인권정책, 기본교육 및 군인의
권리구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
신설)

- ☐ 현행법 제7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(이하 “기본정책”이라 함)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, 기본정책에는 기본목표, 연도별·과제별 추진계획, 재원(財源) 확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고, 기본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『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』

제7조(군인복무기본정책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(이하 “기본정책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
2. 연도별·과제별 추진계획
3. 자원(財源) 확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이에 개정안은 기본정책 수립에 있어 군인의 인권정책, 기본권 교육 및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.

□ 현행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,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.

그런데 개정안의 군인의 인권보호나 기본권 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4조 및 제10조에서 “기본권 보장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제38조에서 “교육의 의무”에 관한 사항을, 제26조에서는 “구타, 가혹행위 등을 금지”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.

『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』

제4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군인의 기본권과 제한)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.

제26조(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)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, 폭언,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8조(기본권교육 등) ① 국방부장관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한편, 국방부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‘군인복무기본정책’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작성된 「2018-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」에 ‘군인 기본권 증진기반 조성’¹⁾, ‘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’²⁾를 정책과제로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의 기본정책 수립에 있어 군인의 인권정책, 기본권 교육 및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함.

「2018-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」

(군인복무기본정책서 정책과제 현황) ① 군인 기본권 증진기반 조성, ② 군인 의무준수 생활화, ③ 존중 /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, ④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

1) 「2018-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」 p17

2) 「2018-2022년 군인복무기본정책서」 p50

2. 대면 방식에 의한 기본권교육 실시(안 제38조제1항)

-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면에 의한 기본권교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기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.
- 현행법 제38조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권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, 교육의 방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『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』

제38조(기본권교육 등) ① 국방부장관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기본권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**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

2.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

3.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

4. 「병역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

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**기본권교육의 실시**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한다.**

- 이에 따라 국방부는 동법 시행령 및 훈령에 따라 병 인권교육을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, 간부 인권교육은 부대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되,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.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 (기본권교육의 운영)

- ③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, 내용,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국방부장관이 정한다.**

「군 인권업무 훈령」 제21조 (교육시기 및 시간)

- ①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
1. 훈련병 인권교육(교육기관) :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(육군 신교대 포함) 중 1시간 이상
 2. 전입신병 인권교육(부대) :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
 3. 병 분대장 등 인권교육(교육기관) :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간(육군 신교대 포함) 중 1시간 이상
 4. 그 밖의 병 인권교육(부대) : 분기 1회 1시간 이상
- ② 간부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시간을 분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부대(기관)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인권교육의 실시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단,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교육하고 1시간 이상 누적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.

- 인권교육을 대면교육이 아닌 원격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할 경우 교육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염병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- 다만, 군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교대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황과, MZ세대의 교육수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307